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용혜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259 발의연월일: 2024. 11. 5.

발 의 자:용혜인・이용우・김우영

임미애 • 이광희 • 위성곤

김준형 • 윤종오 • 한창민

백승아 · 문진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부는 2023회계연도에 본예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없이 보통교부세를 예 산 대비 7조원 이상 불용 처리 방식으로 미지급하였으며, 2024회계연 도에도 같은 이유로 추경 편성 없이 보통교부세를 일부 미지급하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.

내국세의 19.24%로 정해진 정률분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감액하면 지방교부세 세입 예산액에 맞춰 재정 사업 예산을 편성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집행에 큰 곤란을 겪게 되고, 재정력이 낮아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을수록 당해연도 감액의 충격도 커짐. 이는 지자체재정 평탄화와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 축소라는 지방교부세의 주요목적을 훼손하게 됨.

이에 계상된 지방교부세를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할 수 없도록 하고, 당해연도에 감액 조절하지 않은 금액은 익년부터 2년 이내 국가예산 에 계상하도록 함(안 제5조제4항·제5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계상된 교부세를 해당 연도에는 감액 조절할 수 없다.
-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감액 조절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연도부터 다음 다음 연도까지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교부세 조절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도에 교부하는 교부세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예산 계상) ① ~ ③ (생	제5조(예산 계상) ① ~ ③ (현행
략)	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계상
	된 교부세를 해당 연도에는 감
	액 조절할 수 없다.
<u> <신 설></u>	⑤ 제4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
	감액 조절하지 아니한 금액은
	다음 연도부터 다음 다음 연도
	까지의 국가예산에 계상하여야
	<u>한다.</u>